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2550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4 .(9) .06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개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 및 제72조(법률 제12152호, 2014.1.1.)가 개정됨에 따라, 「안산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개정하여 「지방세기본법」과 일치시키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- 조례 조문의 제목 및 내용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용어 정비 (안 제2조, 안 제8조, 안 제9조)
- 제16조의 제목 및 내용 중 “공탁 등”을 “교부금전의 예탁”으로 개정하여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16조)

개정조례안 : 붙임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
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30조(법률 제11616호, 2013.1.1.)
- 「지방세기본법」 제72조(법률 제12152호, 2014.1.1.)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 없음

사전예고결과 : 의견 없음

- 입법예고기간 : 2014. 7. 30. ~ 2014. 8. 19.(20일간)

기타 참고사항 : 붙임

- 현행조례(전문)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9조의 제목 및 본문 중 “보통우편”을 각각 “일반우편”으로 한다.

제16조 중 제목 “공탁 등”을 “교부금전의 예탁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법 제72조에 따라 공탁하거나 또는”을 “법 제72조에 따라”로 하고, 단서를 삭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예탁한”을 “예탁하였을”로, “채권자”를 “채권자, 납세자, 그 밖의 자”로 한다.

제49조제1항 중 “증빙자료”를 “증명자료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세 정 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세정과장 서근식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세정담당 김복수
	담당자 성명·전화	정운주 (행정 2198)

